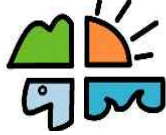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공  보

제1161호 2018년 9월 4일(화)

공 고

○ 하수처리장 부지 점·사용허가 공고 2

하수처리장 부지 점·사용허가 공고

하수도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장 부지 점·사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8월 27일

속 초 시 장

1. 사 업 명 : 해양심층수 사업에 따른 하수처리장 부지 점·사용
2. 점·사용자 : 속초시 동해대로 3930번길 74-24
(주)글로벌심층수 대표이사 도석안
3. 점·사용 목적 : 해양수산물 개발사업 수산물보세장치장 운영
4. 점·사용 장소 : 속초시 대포동 542번지
5. 점·사용 면적 : 11,948m²
6. 점·사용 기간 : 2018. 9. 17 ~ 2019. 9. 16 (1년)